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086
----------	------

2019년 11월 22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10월 16일, 이동현 의원
- 나.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2일
- 다. 상정일자 : 제290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19년 11월 22일 상정, 수정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동현 의원)

### 가. 제안이유

-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후 외부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에는 여전히 미세먼지가 남아 있어 이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후 해제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살수 등의 세척조치를 하여 실효성 있는 행정절차를 수행하기 위함.
-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어린이 놀이시설에 살수 등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조치 노력을 의무화 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1)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 놀이시설의 미세먼지 예방 및 대응 대책의 계획수립(안 제3조2항제7호)
- (2) 어린이 놀이시설 미세먼지 대책의 지원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이후 어린이놀이시설의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조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나. 예산조치 : 원안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4.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 개 요

- 본 개정안은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대상에 어린이놀이기구의 미세먼지 예방 및 대응 대책을 추가시키는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해제 이후 어린이놀이기구의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조치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제2항	<p>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계획 포함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li> <li>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li> <li>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li> <li>4.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시설정비에 관한 사항</li> <li>5. 어린이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 등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li> </ol>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계획 포함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li> <li>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li> <li>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li> <li>4.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시설정비에 관한 사항</li> <li>5. 어린이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 등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li> <li>6.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놀이기구의 미세먼지 예방 및 대응 대책</li> <li>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제7조의2	<신 설>	<p>제7조의2(어린이놀이기구 미세먼지 대책의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경우 그 해제 이후 어린이놀이기구의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p>

- 먼저, ‘어린이놀이기구의 미세먼지 예방 및 대응 대책’을 안전

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안 제3조제2항의 경우는 금년 3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되면서 미세먼지가 법정 재난으로 분류된 현실을 고려할 때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할만하다 하겠다.

-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8,743개소 중 95%인 8,296개소가 개방된 실외에 위치하고 있어 어린이놀이시설에 쌓인 미세먼지를 청소하는 등의 사후대응책 마련은 일부 가능할 수 있겠으나 사전 예방대책을 수립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는 국가나 서울시의 미세먼지 예방정책이 미세먼지 유발자에 대한 근원적 저감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고 현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1) 및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2)에서도 ‘미세먼지관리

- 
- 1)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이 법에 따른 종합계획이 반영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②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제10조에 따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그 추진실적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2)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의 경우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미세먼지 배출현황, 미세먼지 저감 목표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자동차,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
    4. 사업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직전 수립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 자동차·건설기계 발생 미세먼지 저감, 사업장·공사장 발생 비산먼지 저감 등 근원적 예방대책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추할 수 있음.

-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에 국한된 미세먼지 예방대책은 대부분 개방된 실외에 위치하고 있어 미세먼지를 사전에 예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현실성이 없어 이를 배제하고 대응대책만 수립토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표] 본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생략)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략) <u>&lt;신설&gt;</u>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 1. ~ 6. (현행과 같음) 7. <u>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놀이시설의 미세먼지 예방 및 대응 대책</u>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개정안과 같음) ② _____ _____ ----- 1. ~ 5. (개정안과 같음) 6. <u>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놀이시설의 미세먼지 대응 대책</u> 7. (현행 제6호와 같음)

- 다음으로, 안 제7조의2는 시장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해제 후 어린이놀이시설의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조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 현행 조례 제3조제4항3)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관리주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

3)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① ~ ③ (생략)

④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은 관리주체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으며, 시장은 관리주체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 개정안의 해당 조항 신설 시 조항 간(현행 조례 제3조제4항 vs. 개정안 제7조의2) 충돌 발생 및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표] 본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안 제7조의2)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7조의2(어린이놀이시설 미세먼지 대책의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경우 그 해제 이후 어린이놀이시설의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9.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10.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086
----------	------------

제안일자 : 2019년 11월 22일

제안자 : 도시안전건설위원장

## 1. 수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 95%가 개방된 실외에 위치하고 있어 미세먼지를 사전에 예방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므로 예방 대책을 제외하고 대응 대책만 수립토록 수정하고, 시장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제3조제4항에서 관리주체 부담원칙 하에 재정형편에 따라 시장이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하므로 삭제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에 어린이 놀이시설 예방 대책을 제외하고 대응 대책만 포함시킴(안 제3조2항제7호).
- 나. 어린이 놀이시설 미세먼지 대책의 지원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이후 어린이놀이시설의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조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의2).



#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2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예방 및 대응”을 “대응”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안 제7조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6.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lt;신설&gt;</p> <p style="text-align: right;">&lt;신설&gt;</p>	<p>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u>7.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놀이시설의 미세먼지 예방 및 대응 대책</u></p> <p><u>8. (현행 제7호와 같음)</u></p> <p><u>제7조의2(어린이놀이시설 미세먼지 대책의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경우 그 해제 이후 어린이놀이시설의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u></p>	<p>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 ----- -----.</p> <p>1. ~ 5. (개정안과 같음)</p> <p>6. ----- ----- 대응 ----</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lt;삭제&gt;</p>

##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놀이시설의 미세먼지 대응 대책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계획 수립 등)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5. (생략)</p> <p><u>&lt;신설&gt;</u></p> <p>6. (생략)</p> <p>③·④ (생략)</p>	<p>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계획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 놀이시설의 미세먼지 대응 대책</u></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